

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 공시

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제5항에 의거, 당사 내부통제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■ 내부통제기준 주요 변경 내용

주요 변경 내용	비 고
<p>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존 내부통제기준에 <u>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개정함.</p> <p>[개정 내용]</p> <p>제2절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</p> <p>제68조(리스크관리)</p> <p>제69조(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임무)</p> <p>제70조(구성)</p> <p>제71조(소집 및 의결방법)</p> <p>제72조(기밀유지)</p>	<p>- 2022. 07. 12. 이사회에서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 (2022년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 조치된 건임)</p>

2022년 07월 21일

주식회사 에이아이엠투자운용

대표이사 이 상 혁

